

중국 환경보호세법 시행 및 이에 대한 시사점

1. 환경보호세법의 주요내용

(1) 과세주체 및 대상

환경보호세법은 기존 오염비용 징수제도와 달리 과세주체인 납세자와 과세대상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정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세법의 과세주체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직접적으로 외부환경에 과세대상이 포함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체 및 기타 생산경영자입니다(환경보호세법 제2조). 즉,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오염물질 생산에 참여하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외부 환경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 혹은 개인은 과세주체가 아닙니다.

과세대상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오염비용 징수제도의 징수대상이었던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폐기물, 소음 등 4가지 유형의 오염물질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러한 오염물질이 구체적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경보호세법 부록에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호세 세목·세액표” 및 “과세대상 오염물질 및 당량지표¹”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오수, 생활쓰레기 및 고체폐기물에 대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바, 합법적으로 설립한 오수집중처리장소, 생활쓰레기 집중처리장소에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국가 및 지방환경보호표준에 부합되는 시설, 장소에 저장하거나 고체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환경보호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이러한 오염물질이 국가 또는 지방 표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보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환경보호세법 제4조).

(2) 세액 및 계산근거

기존의 오염비용 징수제도 하에서는 “국가징수표준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성급)가 지방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지방정부에 대하여 비교적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환경보호세법은 이러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하였습니다. 환경보호세법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환경보호세 세목·세액표”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해당 지방정부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임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환경보호세법 제6조).

1. 오염 당량이란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 배출 활동이 환경 유해성과 처리기술의 경제성에 근거하여 각 오염물질의 환경오염을 평가하는 종합지표 또는 계량단위를 지칭합니다(환경보호세법 제25조).

또한 환경보호세법은 과세대상인 오염물질 계산 방식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가령 과세대상인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의 계산근거가 되는 “량”은 실제배출량에 근거한 오염당량으로 환산하여서 징수하고, 이러한 계산에 필요한 방법과 “오염물질 및 당량지표”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조세징수

오염비용 징수제도에서 환경보호세 제도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징수 형태의 변화입니다. 환경보호세의 징수는 세무기관이 세수징수관리법 및 환경보호세법에 따라 징수합니다(환경보호세법 제14조).

따라서 납세자는 분기별 또는 회(次) 별로 납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신고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내에 세무기관에 납세 신고를 해야 하고, 회 별로 신고하고자 할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일로부터 15일 내에 납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환경보호세법 제18조).

납세자가 환경보호세를 합법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세수징수관리법, 환경보호법 및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미신고나 체납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환경보호세법 제23조). 이러한 징수 방식의 변화로 인해 기존에 오염비용 징수제도 하에서 실무상 존재했던 여러 문제(징수의 어려움, 지방정부의 간섭 또는 관계 부서간 알력문제 등)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세수감면

환경보호세법은 기존의 오염비용 징수제도보다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환경보호세 감면의 폭을 넓혔습니다. 기존 오염비용 징수제도 하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규정한 배출기준의 50% 미만을 배출한 경우 오염비용의 50%를 감감해 주었습니다(즉, 단일 감면제도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세법 하에서는 납세자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보호세의 75%만 납부하도록 하고(제1감세구간), 농도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보호세의 50%만 납부하도록 하여(제2감세구간), 총 2단계 감면제도로 운영이 됩니다(환경보호세법 제 13조). 그에 따라 환경보호세법 하에서는 기존 오염비용 징수제도보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들의 폭이 넓어졌고, 그에 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조세징수 및 협조

환경보호세 이외의 기타 조세는 주로 세무기관이 관련 세금을 징수하고 기업의 재무 수치가 세금 징수의 기준이 되는 반면, 환경보호세의 징수 및 감세는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측정과 관리와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환경보호세 징수를 위해서는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에 따라 환경보호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무기관과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역할과 업무 공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첫째, 직무 분배와 관련하여 환경보호세는 세무기관에서 징수를 하지만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오염물질의 측정과 관리를 책임집니다(환경보호법 제14조 제2관).

둘째, 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환경보호 주관부서와 세무기관은 환경보호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예컨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오염물질 배출기관 및 단체의 인허가, 오염물질 배출량, 환경 법규 위반 또는 행정처벌 관련 상황 등 환경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세무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신고, 세금입고 상황, 감세, 탈세상황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환경보호세법 제15조).

셋째, 조세 징수와 관련하여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2가지 측면에서 세무기관에 대하여 기술적인 지원을 합니다. 우선 납세자의 배출량 초기 측정입니다. 환경보호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는 납세 신고 시 오염물질의 종류, 수량 및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세무기관에 자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환경보호세법 제18조). 하지만 납세자가 오염물질 배출 관련 자동측정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설비가 규정된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하여 측정합니다(환경보호세법 제10조). 그 다음으로 납세 신고액에 대한 검증입니다.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신고액과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조세 감독을 진행합니다. 가령 세무기관이 납세 신고액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거나 납세자가 규정한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요청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합니다.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세무기관의 요청을 받은 후 15일 내에 세무기관에 대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세무기관은 이러한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미지급 조세액을 확정합니다(환경보호세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6) 지방세수 증가

기존의 오염비용 징수제도에 의하면 기업들이 부담하는 오염비용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1:9 비율로 재정수입으로 잡았는데 환경보호세법 실시 이후에는 중앙정부와 나누지 않고 환경보호세 전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에 귀속됩니다(환경보호세법 제14조 제3관). 이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환경보호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이에 따라 환경보호세법 시행 이후 각 지방정부의 환경 관련 법 집행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시사점

(1) 환경보호세와 기업부담

내년부터 시행되는 환경보호세법의 입법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오염비용 징수제도를 환경보호세법 제도로 “평행이동”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오염비용 부담자를 환경보호세 납세자로 하고, 오염배출 부담항목을 환경보호세의 세목으로 설정하며, 현행 오염배출 비용의 계산방법을 기초로 환경보호세의 세액표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오염물질 배출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적 비용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취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경보호세법 시행 이후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전적 비용은 과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존 오염비용 징수제도에는 단 1개의 감면 구간이 존재한 반면 환경보호세 제도에는 2개의 감세 구간이 존재하여 기존에 감면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도 추가로 감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졌고, 또한 환경보호세법은 기존 오염비용 징수제도에서 하한선만 존재하고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던 제도와는 달리 세액 폭을 10배로 하고 그 구간 중

에서 지방정부가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바²,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세금 부담의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징수표준이 확정되었지만 향후 추가검토를 통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새로운 오염물질이 과세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일부 기업이 이에 대한 배출비용을 지불하지 않다가 관련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보호세를 납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환경보호세 제도가 시행된 후 기업들의 실제적인 부담은 기업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 규정과 실무 입장에 변경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관련 법 규정의 입법추이와 실무 입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환경보호세의 구체적인 세목 증가문제

환경보호세법의 부록 중 “환경보호세 세목·세액표” 및 “과세대상 오염물질 및 당량지표”에서 구체적인 오염물질에 대한 세액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입법 초기 단계에서 논의가 많이 되었던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일부 오염물질이 해당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참고로 기존에 오염물질로 인정되던 VOCs도 환경보호세법의 구체적인 세목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보호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오염물질도 향후 조세 실무와 해당 주관부서의 판단에 따라 세목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동향분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보호세법에 관한 중국정부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인(Phosphorus) 성분이 함유된 세척제, 비닐막(塑料膜) 등은 향후 과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납세의무와 기타 의무의 경합

환경보호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민사책임 또는 기타 법적 책임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보호세법 제26조에서는 “환경에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이나 기타 생산 경영자는 환경보호세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침해한 손해에 따라 법률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기타

중국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은 환경보호세법의 시행은 기업의 오염 처리능력 향상과 오염 배출 감축을 장려하는데 있고 일시적으로 기업 조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기업들은 환경보호세법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비용이 증가되고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동법 시행 초기에 관련 비용이 증가되지 않더라도 기타 관련 설비투자비용이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프로세스 증가로 향후에 기업의 환경 관련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환경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환경 관련법을 근거로 중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환경 관련법 집행을 빌미로 일부 “좀비기업”이나 환경 부담이 큰 기업을 시장에 퇴출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 현지에서 공장이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

2. 가령 대기오염물질의 하한선은 오염당량당 1.2위안이고 상한선은 12위안이고, 수질오염물질의 경우 오염당량당 하한선은 1.4위안이고 상한선은 14위안입니다.

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에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기업들은 환경 관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기업으로의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부 환경전문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기업 환경 관리 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기업의 환경 관련 운영 실태 및 개선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환경 관련 법 규정 및 실무 동향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원중재 파트너변호사

TEL. +86 10 8447 5756

E-Mail. jjwon@shinkim.co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의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